

## 국 가 정 보 원

수신자 조태욱(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57 (청파동3가) 3층)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2021-33	접수일 2021-01-29	(앞 쪽)
청구 내용	제목 : 국정원의 사찰 및 불법공작 관련 존안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의 분량이 많은 관계로 파일로 첨부합니다.	
공개 내용	< 붙임 > 참조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령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 전송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② 우송료                      ③ 수수료 감면액                      계(①+②-③)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 붙임 > 참조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국 가 정 보 원 

## 유의 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http://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붙임 >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법령, 관련 판례 및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행정안전부) >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청구항목 중 제1~2항 기재 정보 - 정보 부존재

귀하께서 공개를 요청하신 해당 항목들('민주동지회가 2009.7.13. 개최한 탈퇴반대 기자회견 내용이 KBS에서 보도되지 못하도록 국정원이 자행한 공작 관련 문서와 보고서 등', '국정원이 민주동지회가 2009.7.13 개최한 탈퇴반대 기자회견 관련하여 KBS가 취재하여 보유중이던 영상자료를 청구인(조태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공작한 문서와 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없음('정보 부존재')을 알려드립니다.

### 2. 청구 항목 중 제4~5항 기재 정보 - 부분 공개

해당 항목들('KT노조 전 부위원장 정홍곤을 포섭하게 된 과정과 민노총 탈퇴지지 성명서를 KT노조 및 민주동지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발표한 이후 이에 관한 국정원의 보고서 등', '국정원이 입수한 민동회 법적대응 관련 선거전략 관련 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건 3개에 대해 공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개일 및 공개방법 안내 :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57 3층, 조태욱)로 3.9까지 등기우편 발송

다만, 대상 문건 중 일부 정보는 국가 정보기관의 조직 관련 사항 및 제3자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국가정보원법 제8조>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및 同法 제9조 제1항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따라 비공개하며,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예

정입니다.

### 3. 청구 항목 중 제3항 및 제6~8항 기재 정보 - 보완 요청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인은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등).

그러나 귀하가 청구서에 기재한 공개청구 정보는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할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수행하거나 관여한 어떤 구체적인 사건 또는 사안에 대한 것인지도 알 수 없어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위 항목들에 적시된 청구대상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보완하여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해 주시면 대상 정보의 존부 확인 및 공개 여부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민동회’측의 부정선거 논란 제기 움직임에 우려

‘08. 12. 5.

## 1. 는

오는 12.9. 노조 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를 앞두고 강성의 ‘민동회’ 측이 사측의 선거개입 논란을 제기하며 당선무효소송 등 법적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어 선거 후유증을 우려

## 2. 관련 내용

### ○ KT 노조는

- 지난 12.3 실시된 위원장 선거에서 예상을 깬 강성의 ‘민동회’ 측 조태욱 후보의 선전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 오는 12.9. 1위(48.75%)인 후보와 2위(42.79%)인 조태욱 후보간 결선투표로 위원장 당선자를 가릴 예정

### ○ 이와 관련, 은

- 고용안정을 바라는 직원들의 안정희구 심리를 파고들어 예상외로 선전한 ‘민동회’측 조태욱 후보가 위원장에 당선될 시 8년간 유지 해온 협력적 노사관계가 와해
- 내년도 예상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업 등 노사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우려코
- 온건성향의 후보의 위원장 당선을 위해 인사·노무라인을 풀가동 하여 지사별로 합리적 후보 당선 지원을 위한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할 복안인데

○ 강성의 '민동회' 측에서

- 예상을 뒤엎은 선전에 고무되어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쟁취할 수 있는 후보는 조태욱 후보임을 내세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어
-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사측의 선거 개입만 차단하면 결선 투표에서 승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 사측의 선거 개입 단서를 잡는데 주력하는 한편 선거(12.9)를 앞두고 언론에 사측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자료를 배포하여 보도토록 함으로써
- 조합원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사측의 개입 움직임을 최소화 내지 위축시킨다는 전략 구사와 함께
- 선거 결과 자파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면 이번 선거가 사측이 개입한 부정선거라며 당선자직무정지가처분신청, 당선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이와 관련,        는

- 온건성향의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력을 집중하면서도 '민동회' 측의 부정선거 시비에 말려들지 않도록 내부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민동회' 측의 반발로 후유증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끝)

## ‘民同會’의 부정선거 제기 움직임 관련 대응에 부심

2008.12.5.

- 强性的의 ‘民同會’측이 오는 12.9. 노조 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를 앞두고 사측의 선거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한편
- 自派 조태욱 후보 낙선시 당선무효소송 등 법적투쟁 불사 전략을 세우고 있어 선거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고 대처에 고심
  
- ‘民同會’는 12.3. 1차 투표시 自派 후보가 예상외로 선전(42.8%)하자
  -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을 바라는 현장 조합원들의 안정희구 심리를 파고든 선거전략이 주효했다고 자평하면서
  - 후보에 대한 사측의 직·간접적인 배후 지원을 원천 봉쇄할 경우 결선투표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판단아래
  - 사측의 선거개입 단서 포착에 주력하는 한편 진보언론 등에 사측 개입 의혹을 방증하는 관련 자료를 집중 배포한다는 계획
  - \* 또한, 조태욱 후보가 낙선할 경우에는 사측이 개입한 명백한 부정선거임을 들어 당선무효소송·당선자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등도 추진
  
- 이와 관련,           에서는
  -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력을 풀가동하면서도 ‘민동회’측의 부정 선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 ‘민동회’측의 집요한 발목잡기로 선거향배에 悪영향 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는 등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

※ 배 포 : 기획관리비서관

## KT 前노조 간부 민노총 탈퇴 지지 성명 발표 이후 관련 동향

2009. 7. 16

- 7.15 KT노조  
내부 통신망 등에 「KT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선언을 지지하며」 題下  
성명서 게재 이후 격려성 전화·댓글 등이 쇄도, 관련 동향파악결과 보고임  
\* 7.16 오전 현재 격려 전화 56건·KT 조합원 게시판에 탈퇴지지 관련글 110건 등록

### □ 관련 내용(요지)

#### 【 KT 간부 】

- 께서 많은 고민을 하여 내린 결단으로 KT 조합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했다
- KT 노조가 왜 민주노총 탈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 주었으며 직원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언동하는 등 호의적인 반응시현

#### 【 KT 노조간부·노조원 】

-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구조조정이 시작된다고 협박하는 사람은 민주노총 탈퇴 후 구조조정이 없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 매년 8억원씩 민주노총에 회비를 납부했다면 그간 100억원 넘는 돈을 냈었네.. 이번에 꼭 탈퇴해서 스포츠 센터나 하나 지읍시다

- 쌍용차 사태에 보듯이 노조와 회사가 다른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없으며 KT노조가 민노총 탈퇴를 위해 지금이 적기이다

등 대부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 완전히 들었구나 덩치값이나 하고 }에게 전임자리 하나 달라고 솔직히 이야기 해라

- 밤길 조심해라

등과 같은 비난·협박성 반응도 있었음

#### □ 조치 의견

- KT의 민노총 탈퇴를 반대하는 민주노동자동지회(회장 : 조태욱)의 핵심 조직원 200명을 비롯한 일부 극렬 노조원들은

- KT 본사 앞 등지에서 “현 노동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무력화 시키고 대규모 구조조정시 반발을 최소화하기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고 선전전 개최 등 투표 종료시까지 반대집회를 획책하고 있고

- 全 조합원(28,612명) 상대로 “민노총을 탈퇴하면 그 다음 수순은 대규모 해고 사태로 이어진다”라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집요하게 선전·선동하고 있어 민노총 탈퇴안이 부결될 가능성 상당히 농후한 바

○